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5073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5-08-0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www.etoos.com

etoos247@etoos.com

『이투스24/7』

정보공개서

이투스이씨아이(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이투스이씨아이(주)

< 주의 사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47, 3층(서초동)

대표전화번호 : 02-414-9001

대표팩스번호 : 02-597-0247

가맹사업부 전화번호 : 02-414-900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이투스이씨아이(주)	『이투스24/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47, 3층(서초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 개업년월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5.08.26	2015.09.01	김시황	02-414-9001	02-597-0247
	법인등록번호	110111-5820447	사업자등록번호	539-86-00235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가맹본부	이투스이씨아이(주)	이투스24/7	김시황	02-414-9001	02-597-0247
			주소		
특수관계인 (임원)	김시황(대표이사) 권현(사내이사) 노재규(사내이사) 김근욱(사내이사) 남형주(사내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47, 3층(서초동)		



모회사	상호	이투스에듀(주)	대표이사	정선욱
	법인등록번호	110111-8285888	사업자등록번호	505-87-02372
	전화번호	1599-6405	팩스번호	02-6442-7637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47(서초동)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이투스24/7』	입시명문 이투스 교육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상호	『이투스24/7』 _____점	해당 지역 명 표기
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172941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172942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359976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0,045,967	11,269,250	-1,223,283	10,206,873	680,267	1,250,907
2022년	7,500,576	6,415,076	1,085,499	13,938,872	2,262,356	2,194,281
2023년	15,631,945	13,894,891	1,737,054	13,351,204	1,753,085	1,168,592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시황	2021.07.12.~현재	대표이사	FC사업총괄
	권현	2022.03.31.~현재	사내이사	경영지원
	노재규	2023.04.18.~현재	사내이사	경영지원
	김근욱	2023.04.18.~현재	사내이사	경영지원
	남형주	2023.04.18.~현재	사내이사	경영지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5		8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이투스이씨아이(주)	가맹사업 경영	2015.08~현재	이투스 수학학원(등록번호: 20161074)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	등록번호	권리인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09류	2016.04.15	40-1172941	이투스교육(주)	등록일로부터

					10년
	16류	2016.04.15	40-1172942	이투스교육(주)	등록일로부터 10년
	41류	2016.05.20	41-0359976	이투스교육(주)	등록일로부터 10년

- ① 당사는 [이투스24/7]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상기 지식재산권의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이투스24/7] 가맹사업 현황

1. [이투스24/7] 를 시작한 날: 2015년 12월 3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5년 2월 7일)

*상기 직영점을 시작한 날은 당사가 [이투스24/7]의 가맹사업권을 양수하기 이전에 前가맹본부 “이투스교육(주)” 명의로 운영하던 직영점의 개점일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가맹사업의 전개를 위하여 2015.08.26. 당사(상호: “이투스이씨아이(주)”)를 설립하고 관련 가맹사업을 양수하였으며, 현재 당사에서 [이투스24/7]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 [이투스24/7]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투스이씨아이(주)	이투스24/7	강성진	2015.08.26.~ 2016.01.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3(삼성동)
이투스이씨아이(주)	이투스24/7	강성진	2016.01.31 ~ 2016.11.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2층 202호(정자동, 플라리스빌딩)
이투스이씨아이(주)	이투스24/7	강성진	2016.11.14. ~ 2017.09.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00, 5층 506호(정자동, 삼성미켈란쉐르빌)
이투스이씨아이(주)	이투스24/7	우희철	2017.09.01~ 2018.09.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47, 2층(서초동)
이투스이씨아이(주)	이투스24/7	이종서	2018.09.03. ~ 2019.04.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47, 2층(서초동)
이투스이씨아이(주)	이투스24/7	최영주	2019.04.01.~ 2021.07.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47, 3층(서초동)
이투스이씨아이(주)	이투스24/7	김시황	2021.07.12. ~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47, 3층(서초동)

3. [이투스24/7]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이투스24/7	교육(교과)	N수생 교육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이투스24/7]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65	60	5	64	60	4	66	62	4
서울	16	14	2	16	15	1	17	16	1
부산	4	4	-	4	4	-	5	5	-
대구	3	3	-	3	3	-	3	3	-
인천	3	3	-	3	3	-	3	3	-
광주	5	5	-	5	5	-	5	5	-
대전	2	2	-	1	1	-	1	1	-
울산	1	1	-	1	1	-	1	1	-
세종	1	1	-	-	-	-	-	-	-
경기	19	16	3	21	18	3	21	18	3
강원	2	2	-	2	2	-	2	2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1	1	-	2	2	-	2	2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	-	-	-	-	-	-	-	-
경남	4	4	-	2	2	-	2	2	-
제주	1	1	-	1	1	-	1	1	-

5. 바로 전 3년간 [이투스24/7]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63	-	2	1	-	60
2022	60	4	4	-	1	60
2023	60	3	1	-	1	62

6. [이투스24/7]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모두 [1]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	이투스이씨 아이(주)	이투스 수학학원	20161074	교육	57/0	51/0	44/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이투스24/7] 가맹점사업자가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 하한				비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62	515,848	4,444	1,135,600	8,227	139,030	1,158	60 곳 산정
서울	16	615,124	5,191	987,350	8,227	283,040	2,150	15 곳 산정
부산	5	631,688	3,581	1,135,600	6,308	249,980	1,423	5 곳 산정
대구	3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인천	3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광주	5	448,850	4,058	593,880	6,655	139,030	1,158	5 곳 선정
대전	1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경기	18	494,124	4,858	719,200	7,467	228,144	2,281	17 곳 산정
강원	2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전북	2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전남	1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경북	-	-	-	-	-	-	-	-
경남	2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제주	1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 * 상기 매출액은 각 가맹학원에서 당사에 신고한 등록 원생 수와 평균 교육비를 근거로 산출 되었으며, 실제 매출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매출액은 2023년 당사의 60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 지점인 노량진점과 수원정자점은 제외했습니다.

8. 가맹점의 평균영업기간

사업연도	가맹점 수	영업기간
2023년	62곳	2398일

상기 평균 영업 기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입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이투스24/7]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별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및 판촉	(비공개)	2023년	896,448	896,448	-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께서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전지점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번지	1577-8008

- ①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1일 이내**에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이투스이씨아이(주)**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③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멀티채널부) 방문 → ③ 가맹금예치 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www.shinhan.com) 접속 → ③ (기업뱅킹)클릭 → ④ 기업지원서비스(가맹금 예치제)클릭 → ⑤ (가맹점사업자 서 비스페이지 바로 가기)클릭 → ⑥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가맹금 이체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신한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개인인감 증명서 ⑤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
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
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신한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
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이투스24/7]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이투스 24/7]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좌석 수 100석 기준, 단위 : 만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포함내역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880]				
가맹비	[880] * 좌석 수 × (8)	계약 체결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비 (가맹비의 10%) •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교육, 오픈지원 (가맹비의 90%)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경우 일부 반환될 수 있음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반환 안 됨
개점 전 교육비	교육 실비		최초 프로그램 교육비	교육시작 3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준비에 소요된 실제 비용

* 가맹비 산정기준은 좌석 수 X 88,000(VAT포함)로 위 금액은 100석 기준 가맹비입니다.

** 최소 기준 좌석 수는 60석이며 가맹비의 최소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 좌석 당 가맹비는 조정이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점 전 교육비는 교육준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청구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만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포함내역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현금)보증금	[3,000]	계약 체결 시	가맹계약 상 의무이행 및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	계약 종료 시 미지급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 이행 채무 또는 가맹계약 위반 시

거래 보증금은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으로 미 이행 채무 및 가맹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좌석 수 100석 기준

구분	금액(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880
(현금)보증금	3,000(부가세 없음)
계	3,880

4) 시설 및 설비와 관련된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개설 기준: 실 평수 약 90평(100석) 기준,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4,760	164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매장상황 및 점주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냉난방 미포함)	선택사항 (당사의 지정업체 또는 직접시공가능)	9,900	110		착공 7일전 계약취소	당사 인테리어 시방서에 따라야 함
네트워크	선택사항 (당사의 지정업체 또는 직접시공가능)	1,100	-	계약시10% 착공시20% 중도금40% 완공시30%	시공 전 계약취소	
간판 및 사인물	선택사항 (당사의 지정업체 또는 직접시공가능)	1,100	-		시공 전 계약취소	
가구류	지정업체	2,000	-	착공시		
학습기기 (테블릿PC)	자체조달	660	-	물품인수 전	계약취소	기기불량시 교체 33만원/대 (VAT 포함)

※ 비교

- ▶ 인테리어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은 인테리어업체와 귀하가 협의한 날짜에 결제함
- ▶ 해당 금액표시는 가맹점 점포의 크기 및 귀하의 선택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합계는 귀하가 가맹점 개설을 위한 해당 내용의 단순 합계금액으로서 표시되었음
- ▶ 당사는 귀하에게 BI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귀하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귀하의 요구 시 당사는 협력업체를 소개할 수 있음
- ▶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가맹점포 시장성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초도물품을 제외한 품목은 모두 영업 개시 전 설치 및 배치가 완료되어야 함
- ▶ 상기 내역 및 금액은 당사의 경영사정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 ▶ 귀하는 오픈과 관련된 업무 및 절차 일체에 대하여 본사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당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좌석수를 포함한 실내 인테리어 도면의 확정은 당사와 가맹점주 간 합의를 통해 정함

※ 별도사항

- ▶ 개별 인테리어 시공 시 당사의 감리는 필수사항이며 본사에서 추천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진행할 경우 감리비는 별도 발생하지 않으나, 추천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진행할 경우 감리비는 30,000원/m²부터 80,000원/m²사이의 금액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VAT 별도)
- ▶ 절기공사, 전면신규공사, 승압공사 등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위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제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제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 점포 계약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가 규정한 점주 교육과정 수료 정기교육, 보수교육 이수 (재계약 조건)	교육청 강사등록자격에 미달되지 않는 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자 (고졸의 경우, 2년 이상 교육경력 있는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기타 학원 설립/운영 자격을 갖춘 자
직원	가맹점 실제 운영자(가맹점관리자)인 경우 점주 교육과정 수료	당사의 자격기준에 미달 시 당사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후 충족 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투스24/7]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의 가맹금 납부의 또 다른 절차규정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	------	----	------	------	-------------	----

광고비	당사	좌석 수 당 33,000원 ~ 88,000원	대금 청구 시	광고·관측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광고·관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연 1회에 한함
관측 분담금	당사	가맹계약서 제28조 참조		-	-	공동 관측에 한함
정기지급금	당사	계수(N수)생 : 수강생 1인 당 62,150원 고등 재학생 : 수강생 1인 당 37,950원	익월 25일	해당 없음	반환되지 않음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비용
출결 시스템 이용료	당사	월 15,400원	익월 10일	해당 없음	반환되지 않음	내부 출결시스템 이용료
교육훈련비	당사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교육 필요시 지급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공급업체	개별 산정	대금청구 시	해당 없음	교체 보수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공급업체와 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	공급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착공 시	착공 전	VII-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ERP 및 홈페이지 사용료	당사	월 99,000원	익월 세무계산서 발행	해당 없음	시스템 관리비로 반환되지 않음	회원관리 시스템 사용료
지연이자	당사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 지급의부 지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 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가맹점을 점검하고,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교육장비, 교재 등의 취급 여부 및 보관 상태, 위생 상태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의 점검은 위생, 각종설비관리, 시설기자재관리, 강사채용 및 관리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귀하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및 전문성, 이미지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여 영업해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는 즉시 시정하고 귀하의 비용으로 시설·설비 등을 철거·교체·보수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관하여 건설한 자금관리 관행 등을 가져야 하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성실히 보관하고, 당사가 가맹점 운영실적 등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가 가맹점으로서 의무와 가맹점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당사의 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취하거나, 정기적 또는 수시 방문을 통하여 귀하의 시정 여부를 수시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 ⑥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기타 가맹점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 및 조사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⑦ 당사는 점포관리기준을 귀하에게 제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점검합니다. 점포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⑧ 당사는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의 경영 합리화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시 귀하에게 운영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운영매뉴얼이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해 변경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계약기간 중 운영매뉴얼이 변경될 경우 당사는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귀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귀하는 변경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후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①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최초가맹금의 50%를 갱신가맹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구입요구품목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의 가맹점이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 ㉞ 귀하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 계약 포함) 시 계약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재계약 3개월 전 통보해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㉟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상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의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맹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할 수 있으며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㊱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귀하에게 해당 사유가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20일 이전에 이를 알리고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및 동의하여야 합니다. 간판, 설비, 집기 등에 부착된 영업표지의 변경비용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분담하기로 합니다.

- ㊲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당사의 승인을 득한 양수인이나 임차인 등은 가맹계약서에서 규정한 금액 중 매뉴얼 등 제공비를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의 가맹기간은 양도인의 가맹기간의 잔여기간으로 인정하되, 신규 가맹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5]쪽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서 제40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갑’은 당사를, ‘을’은 귀하를 의미합니다).

- “갑”이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㉓ “을”은 계약 유효기간 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갑”의 영업 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㉔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을”이 부담하고 “갑”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㉕ “갑”과 “을”은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한다.
- ㉖ “갑”은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㉑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의 상호·간판 등 [이투스24/7]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즉시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한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관련 자산 일체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㉒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제21조 제3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입차

1) 귀하가 『이투스24/7』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입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입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귀하께서 위 표에 기재된 물품(강제 품목)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별첨 2] 참조**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첨 2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별첨 3]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별첨 1]과 같습니다.
- ㉡ 귀하가 [별첨 1]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변경 또는 추가)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는 각종 원·부재료 등 물품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등을 고객판매 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와 물품 공급의 즉시 중단 2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와 계약 해지 가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의 통보 방법은 문서로 진행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①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②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N수생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사업	이투스24/7	-

2)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 설정 기준	설정방법
①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제외 ② 주택가, 아파트상권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상동(洞)단위당 1개 ③ 일반학원가 상권의 경우 반경 300m 이내(단, 왕복4차선 이상의 도로에 인접한 경우 50m 이내) ④ 대형 입시학원 밀집지역의 경우 특수상권으로 규정.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점포가 위치한 건물 내로 한정	계약체결 시 가맹계약서 영업지역 표시도에 영업지역 표시

3)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통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

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증제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이투스24/7』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이투스24/7』와 다른 업종(N수생 외 중고등학생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추가로 개원할 수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당사는 마켓ECI라는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이투스24/7학원 재원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사 온라인몰을 포함한 매출액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76%	24%	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당사는 마켓ECI라는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이투스24/7학원 재원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 온라인몰에서만 판매하는 전용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이투스24/7]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의 시작 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시 계약기간은 갱신일 또는 재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input type="checkbox"/>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대금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 1항 각호
<input type="checkbox"/>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학원·설비·직원 등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갑”이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갑”이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당사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당사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맹사업법 및 관련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①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input type="checkbox"/> 귀하가 당사에 지급할 공급품 대금 및 기타 채무의 미지급금이 거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39조 1항 각호
<input type="checkbox"/> 제10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영업표지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14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23조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24조 직원 채용 기준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25조 당사의 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26조 귀하가 학습기기 구매·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27조 및 제28조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29조 인터넷 강의에 대한 영업활동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29조의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략강좌의 판매촉진활동을 거부하거나 불법강의를	

하는 경우	
○ 제30조 교제 등의 조달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32조 영업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위조 또는 임의 폐기하거나 당사에 허위 보고하는 경우	
○ 제34조 가맹점 운영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	
○ 제36조 당사의 사전동의 없이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하는 경우	
○ 제41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사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유출하는 경우	
○ 제47조 본 계약과 관련된 귀하의 현황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3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 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인허가, 보험의 가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맹점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당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 정기납입 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기타 본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③ 다만, **아래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39조 제2항의 규정으로 “갑”은 당사를, “을”은 귀하를 의미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건
○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9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계약서 제 39조 ①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계약서 제 39조 ①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④ 당사가 다음 표의 행위를 한 경우 귀하는 당사와 최고의 절차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9조 4항
④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과산한 경우 2. “갑”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갑”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건
○ 영업표지 등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3조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정해진 교육비와 계약이행보 증금을 완납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02-414-9001

① 양수인이 동의하는 경우 당사와 양수인은 새로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양수인에게 부여하고 새로운 가맹계약에 따라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3) 가맹점운영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에 준함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양도절차에 준함	
업무위탁	불가능			

* 영업의 상속 및 증여에 따른 경우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배우자 또는 존·비속에 한하고 있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승낙 없이 자신(직계가족을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지 아니합니다.
-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본 가맹계약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본 계약에 의한 영업 방식 및 영업형태와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제①항 내지 제②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N수생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 기타 본 가맹사업과 동일한 교육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02-414-900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이투스24/7]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7:00 ~ 22:00(15시간)	365일 연중 무휴 영업	문의: 가맹본부 02-414-900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상호 간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권장 직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직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직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4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명시된 권장 직원 수는 100석 기준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장 직원 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명부 및 기본정보는 본사에 보고 해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상

② 당사는 주로 상기 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가맹점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조치 및 보수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는 이를 수용하셔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① 당사는 『이투스24/7』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광고 진행 시 별도 협의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온라인)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	
개별 광고/판촉 활동	전단광고 등	없음	전액 부담 (연 400만원 이상)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 승인여부 통지	가맹점 별도 공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가맹점 별도 공지

②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당사와 귀하간의 광고비 기본 분담비율은 5:5입니다. 단, 분담에 관한 광고 계획 미 공고 시 가맹점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에 사전 승인을 얻어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각자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전단, 카타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이투스24/7』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①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②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③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계약서 제43조에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갑’은 당사를, ‘을’은 귀하를 표시합니다.

제43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 ① 본 계약의 해지는 양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을”이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2년 이내에 제34조(부당행위금지)와 제41조(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을”은 위약금 금일천만원(W10,000,000)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을”이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제40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을”은 관련법령(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손해배상 외에 1일당 금일십만원(W100,000)의 위약벌을 “갑”에게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을”이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5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 “갑”에게 위약벌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본 계약의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유책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제14조에 따라 제3자에게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갑”이 기존 조건 그대로 제3자에게 가맹사업 일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지일 직전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A
A: 잔여 계약기간 기준
12개월 미만: 2개월분(A=2)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4개월분(A=4)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6개월분(A=6)
단, 영업일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최초 개점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한다.

⑦ “갑” 또는 “갑”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①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구분	내용	예상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50일 내외 (점포 개발 및 상권분석 기간 제외)	[13p~19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 가맹점개발자 전화상담, 본사방문, 현장상담, 창업설명회 참석	7일~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안내 - 가맹계약 체결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2일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투자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공사 일정 확인	2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30~35일	
오픈 준비사항 협의	- 가맹점 담당 컨설턴트와 오픈 준비 등 협의	20일	
제반 인허가 취득	- 영업허가, 학원설립운영등록, 사업자등록, 책임보험가입, 강사등록		
교육 실시	- 가맹점 운영교육 실시	5일	
설비, 집기, 의/탁자, 간판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2일 인테리어 완공시	
오픈 프로모션	- 오픈 판촉물, 홍보물 입고	1일	
가맹점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②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시) -점포 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상호 협의 시
- 강사 채용이 늦어질 경우

③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조항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유추 해석하여 적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따릅니다.
- ②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 앞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를 제안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조정 결정이나 중재판정에 따릅니다. 조정의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할 법원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가구·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기타	○ 본사와 협의를 하지 않거나 본사의 승인 없이 점포 환경개선을 진행하여 브랜드 BI 미 준수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가맹본사의 매뉴얼에 따라 변경해야 함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 지원	가맹점 오픈시 관측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관측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관측인원 수 및 관측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3일간	200만원 한도	
입사자료집 등	설명회, 입시 등 시즌발생시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판매가로 제공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 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02-414-900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문의: 가맹본부 02-414-9001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이투스24/7]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상의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이투스24/7]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점 전 교육·훈련

㉠ 센터장/학습매니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행정직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② 개점 후 교육·훈련

㉠ 운영 중 신규 입사자 교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개점 후 정기교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이투스24/7]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비용(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별도 통지	교육 실비
제계약 가맹점사업자 교육		별도 통지	교육 미수료시 계약갱신 거절 사유 발생
정기교육	교육시장 환경 분석 및 입시교육	별도 통지	수시 진행 (필수교육)
	시스템 활용		
	ERP 활용		
유지보수교육	각종 시스템 활용, 행정업무 전반	별도 통지	신규직원 채용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에서 근무할 직원들도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채용된 직원들의 경우 최초 개점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결원시 발생하는 신규 입사자교육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대상자가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XI.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이투스247학원 강남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28 13층
2	경기	이투스247학원 분당정자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2층
3	경기	이투스247 씨밋학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202호 일부
4	경기	이투스247학원 양평점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147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7년		4곳 기준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해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입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215,078		4곳 기준

(단위 : 천원)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 4곳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실제 매출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1] 공급 교재 등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2] 필수품목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3]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확인서

[가맹희망자]

■ 가맹희망자 유의사항

1.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서는 이투스씨아이(주)가 운영하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시,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는 상기 유의사항을 필독하여 주시고, 아래의 ①~⑦까지 직접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본인은 이투스씨아이(주)의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입니다.

- ① 성 명 :
- ② 주 소 :
- ③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이투스씨아이(주)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 ④ 제공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오전 / 오후)에
- ⑤ 제공장소 : ()에서
- ⑥ 정히 () ["수령하였습니다" 라고 가맹희망자 자필 기재]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아래 상기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합니다.

⑦ 가맹희망자 본인 () (인)

*담당자 유의사항 : 이투스씨아이(주)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담당자는 ①~⑦ 까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가맹희망자 필체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아래 담당자 옆 자신의 이름을 자필 정자체로 기재한 후, 서명 혹은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자 : 이투스씨아이(주) 담당자 _____ (인)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확인서

[가맹본부]

■ 가맹희망자 유의사항

1.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서는 이투스씨아이(주)가 운영하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시,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는 상기 유의사항을 필독하여 주시고, 아래의 ①~⑦까지 직접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본인은 이투스씨아이(주)의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입니다.

- ① 성 명 :
- ② 주 소 :
- ③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이투스씨아이(주)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 ④ 제공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오전 / 오후)에
- ⑤ 제공장소 : ()에서
- ⑥ 정히 () ["수령하였습니다" 라고 가맹희망자 자필 기재]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아래 상기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합니다.

⑦ 가맹희망자 본인 () (인)

*담당자 유의사항 : 이투스씨아이(주)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담당자는 ①~⑦ 까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가맹희망자 필체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아래 담당자 옆 자신의 이름을 자필 정자체로 기재한 후, 서명 혹은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자 : 이투스씨아이(주) 담당자 _____ (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본부]

■ 가맹희망자 유의사항

본 점포 현황은 최신일자 기준으로 작성되나, 타점포 개점 / 폐점일자 및 인접거리점포 오계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인근 점포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따라 당사의 전체 가맹점현황을 당사 홈페이지에 모두 제공하고 있으나, 아래 점포 외에도 확인하실 점포현황내역이 있다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가능합니다. 이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관련하여

이투스이씨아이(주)는 귀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시,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No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맹본부(02-414-900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 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etoos.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